[별표 4]

신규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범위 조정
(제12조제1항 관련)

□ 신규 상시고용인원

신규 상시고용인원수	지원 비율 가감		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0명 초과 10명 미만	-(기본지원비율×0.7)%p	-(기본지원비율×0.3)%p	-(기본지원비율×0.2)%p
10명 이상 20명 미만	-(기본지원비율×0.6)%p	-(기본지원비율×0.2)%p	-(기본지원비율×0.1)%p
20명 이상 30명 미만	-(기본지원비율×0.5)%p	-(기본지원비율×0.1)%p	-
30명 이상 40명 미만	-(기본지원비율×0.4)%p	-	1%p
40명 이상 50명 미만	-(기본지원비율×0.3)%p	1%p	2%p
50명 이상 60명 미만	-(기본지원비율×0.2)%p	2%p	3%p
60명 이상 70명 미만	-(기본지원비율×0.1)%p	3%p	4%p
70명 이상 80명 미만	-	4%p	5%p
80명 이상	1%p	5%p	6%p

* 신규 상시고용인원 :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(국내・외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한 경우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)

□ 당회 보조금액 관련 투자규모

투자규모	추가 지원 비율		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			1%p
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		1%p	2%p
5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	1%p	2%p	3%p
1,000억원 이상	2%p	3%p	4%p